

# 建築法中 改正法律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고한다.

1980년 1월 4일  
◎ 法律 第3, 251号

대통령 최규하

국무총리 신현확  
국무위원 최종완  
건설부장관

建築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条 第1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垡地”라 함은 地籍法에 의하여 各筆地로 区割된 土地를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2 이상의 筆地를 하나의 垡地로 본다.

第5条 第1項 및 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都市計剛区域, 国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区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区域안에 있어서의 建築物과 기타 区域안에 있어서의 延面積 200 平方미터 이상이거나 3層이상인 建築物을 建築 (増築의 경우에는 그 増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 平方미터 이상이 되거나 3層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大修善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市長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바닥 面積의 合計가 30 平方미터 이내의 増築·改築 再築 또는 大修善 繕繕繕
2. 이미 建築許可를 받은 建築物로서 바닥 面積의 合計가 30 平方미터 이내 또는 延面積의 10분의 1이내의 바닥 面積의 増減을 위한 設計變更이나 大修繕에 해당되는 設計變更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第1項과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微한 事項의 變更은 이를 許可 또는 申告없이 할 수 있다.

第6条 第3項中 “工事監督者”는 다음에 “당해 工事期間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築士法 第2条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補로 하여금 工事現場에 常駐하여 工事現場를 補助하도록 하고”를 挿入한다.

第8条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条의 2 (都心部내의 建築物에 대한 特例)

- ① 都心部 또는 幹線道路邊境 市長 또는 郡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都市設計를 樹立하여 公告한 地域내에서 建築하는 建築物은 都市設計에 적합하게 建築하여야 한다.

- ② 市長 또는 郡守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設計를 作成한 때에는 30日間 一般의 供覽에 供한 후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設計는 都市의 機能 및 美觀의 増進을 위한 長期 綜合的 計剛으로서 都市計剛에 의한 都市計剛施設 및 土地利用計剛등을 具体化하고 建築物 및 公共施設의 位置·規模·用途·形態와 空間의 活用등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作成하여야 한다.

第10条 第2項중 “第5条 第1項 第2号 및 第3号”를 “第3条 第1項 本文”으로 한다.

第25条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5条 (建築資材의 品質) 建築物에 사용하는 建築材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標示品으로 하되 韓國工業規格標示品이 없는 建築材料에 대하여는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 또는 工業品品質管理法에 의한 檢査基準에 적합하다고 建設部長官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第39条의 2 第2項중 “第27条·第39条의 2·第40条·第41条”를 “第1項·第27条·第39条·第40条·第41条 및 第41条의 2”로 한다.

第51条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1条 (工事現場의 危害의 防止) ① 建築工事의 施工者는 당해 工事의 施工으로 인한 落盤, 建築物이나 工業用工作物의 倒壞 기타 落下物 및 高圧電線등에 의한 危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危害의 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事項은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第53条의 5 및 第53条의 6을 각각 削除한다.

第53条의 7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② 許可令은 都市計剛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第3章 내지 第5章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建築物 또는 垡地에 대하여는 都市機能 및 美觀을 沮害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規定을 緩和하여 許可할 수 있다.

第54条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4条 (罰則) 都市計剛区域안에서 第5条第1項 本文·第31条·第39条·第40条·第41条 또는 第41条의 2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는 建築主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6月이상 3年이하의 懲役에 處하고 3,000萬원이하의 罰金을 併科한다.

第55条중 各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第6条第2項·第6項·第7項 또는 第7条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建築主
2. 都市計剛区域외에서 第5条第1項 本文·第31条·第39条·第40条·第41条 또는 第41条의 2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는 建築主
3. 第7条의 2·第7条의 3 第1項 또는 第29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와 第42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4. 第9条第4項 또는 第10条의 規定에 違反한 設計者·工事監理者 또는 工事施工者

5. 第17条第1項 또는 第49条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假設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建築하는 建築主

第56条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6条(同 前) 다음 各号의 1에 해당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条第1項 但書, 第7条第1項 또는 第47条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申告를 한 者
2. 第6条第3項 또는 第7条의 3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보고를 한 者
3. 第9条의 2 第1項·第28条 또는 第51条의 規定에 違反한 建築主·工事監理者와 工事施工者

第56条의 2 第1号 및 第2号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第6条 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建築主
2. 第7条第4項 또는 第50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알 림

회원 작품 기고는 다음 요령에 의해 원고를 작성 투고 바랍니다.

작성요령

1. 도면작성은 트레싱 paper나, 켄트지에 inking할 것.
2. 축척표기는 도표로하여 축소,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것.  
(例 0 1 2 3)
3. 1층 평면도와 배치도를 겸하는 것은 가급적 피할 것.

1. 도면작성 가) 평면도 ( $\frac{1}{100}$ ,  $\frac{1}{200}$ )

나) 단면도 ( $\frac{1}{100}$ )

다) 배치도 ( $\frac{1}{200}$   $\frac{1}{300}$   $\frac{1}{600}$ )

라) 주요부분 상세도 ( $\frac{1}{30}$   $\frac{1}{60}$ ) (必要時)

2. 설계개요서 : 일반적 기술보다는 계획과정과 계획개념 설명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하기 바람. 200자 원고지 × 3 ~ 5매

3. 사진 : 가) 전경사진

나) 내장사진

다) 부분사진 (Detail Design 에 주안점을 줄것.)

라) 설계자사진 (명함판 사이즈로 프로필이나 가능한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음).